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6 - 202호

의 안 명 「국가 및 지방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제도개선」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지방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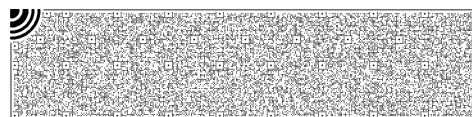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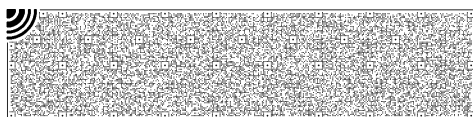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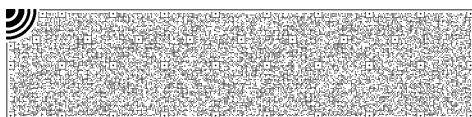
의 결 일 2026. 6. 15.

주 문

「국가 및 지방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제도개선」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인사혁신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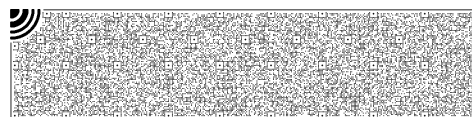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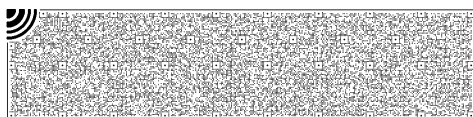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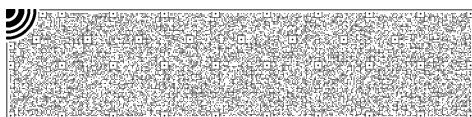
【별 지】

국가 및 지방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제도개선

2026. 6.



국민권익위원회



I 추진배경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공무원 채용시험은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능력주의 인사원칙이 구현되는 대표적 공적 절차임
 - 그러나 시험 응시 단계에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행정 편의와 비용 회수라는 목적은 있으나, 구직 초기 단계에 있는 청년·취업 취약 계층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특히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이미 응시 수수료의 감면 근거를 두고 있어, 현행 제도 역시 응시 수수료를 절대적 비용으로 보지 않고 정책적으로 조정 가능한 항목으로 전제하고 있음
- 현재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는 5급 이상 1만 원, 6·7급 7천 원, 8·9급 5천 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역시 대통령령과 각 지방정부 인사규칙 체계 아래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음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장애인연금 수급자·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이미 면제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이는 응시수수료가 원칙적으로 징수 대상이더라도, 공공정책상 필요가 있으면 넓게 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
-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법률과 하위 법령에서 “감면할 수 있다”,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형태를 취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 지방정부 간 운영 수준이 균일하지 않아 형평성이 저하됨

- 특히 지방공무원은 각 시·도 및 시·군·구, 지방의회 인사 규칙에 따라 실제 적용 문구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수험생 입장에서도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낮음
- 최근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인사관리상 우대 근거를 신설한 점을 고려하면, 응시수수료 면제는 더욱 명확하고 통일적인 설계가 필요한 시점임
- 2025년 국가공무원 공채 기준으로 9급 시험 지원 인원은 10만 5,111명, 7급은 1만 2,290명,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1만 2,005명으로 총 12만 9,406명에 달함
- 현행 수수료를 단순 적용하면 2025년 국가공무원 5·7·9급 시험의 응시수수료 수입은 약 7억 3천만원으로 추정됨
 - ※ 지방공무원은 응시인원 통합통계 부재로 인해 국가공무원 대비 약 1.5배 수준으로 추정시 응시수수료는 약 11억원 상당
- 이는 국가 전체 인사행정 규모에 비추어 매우 제한적인 재원(약 18억)인 반면, 수험생 개인에게는 여러 시험에 반복적으로 응시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함
- 따라서 응시수수료를 비용회수 중심으로 유지할 것인지, 공직 진입 지원 중심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공직 접근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



Ⅱ 일반현황

1. 현행 법령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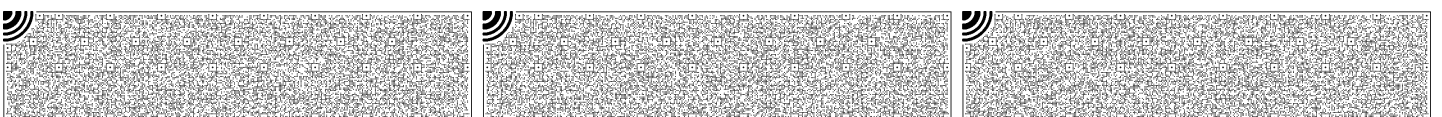
- 국가공무원법 제85조의2는 신규 채용시험 응시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되, 실비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과오납 등 반환 사유와 수급자 등에 대한 감면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 지방공무원법 제81조2도 동일한 구조로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의 납부·반환·감면 근거를 두고 있음
- 국가와 지방 모두 이미 법률상 감면 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쟁점은 감면 가능 여부가 아니라 면제 범위와 적용 방식임

< 공무원 응시수수료 관련 법령 >

구분	법률	하위 법령 근거 (대통령령, 자치법규)	주요 내용
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85조의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	수수료 납부, 반환, 감면 근거 규정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4조, 각 지자체 인사규칙	수수료 납부, 반환, 감면 근거 규정

2. 국가공무원 응시수수료 운영 현황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는 5급 이상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만 원, 6·7급 7천 원, 8·9급 5천 원 수준임



- 과오납, 시험실시기관 귀책사유, 접수기간 중 또는 마감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철회 등의 경우 반환규정을 두고 있으며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장애인연금 수급자·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에 대한 면제 근거도 두고 있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자격 확인 규정도 마련되어 있음
- 국가공무원 시험은 인사혁신처가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공채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을 통해 일괄 공고하고, 응시원서 접수와 수수료 납부도 온라인으로 통합 처리함

3. 지방공무원 응시수수료 운영 현황

-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2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64조에 따라 수수료 부과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 구체 금액과 세부 집행은 각 시·도 및 시·군·구, 지방의회 인사 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 ※ 서울특별시, 경기도, 서울 송파구 등 다수 자치단체 인사규칙은 5급 이상 1만 원, 6·7급 7천 원, 8·9급 5천 원 체계를 채택하고 있음
- 최근 안성시, 구리시, 수원시의회, 충청북도의회 등 자치법규에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에 대한 면제 조항을 반영하고 있음
- 지방공무원 채용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광역 단위로 운영되지만, 실제 시험 공고와 세부 규정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음
 - ※ 2026년 3월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등 각 시·도의 원서접수 현황이 개별적으로 게시되고 있음



4. 응시수수료 및 재정적 규모

- 국가공무원 2025년 기준 지원인원은 ▲9급 10만 5,111명, ▲7급 1만 2,290명,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만 2,005명으로 총 12만 9,406명에 달함
- 현행 수수료를 단순 계산하면 연간 응시수수료 수입은 약 7억 3천만 원으로 추정됨

< 국가공무원 응시수수료 수입 추정(2025년 기준) >

구분	지원인원	수수료	추정 수입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12,005명	10,000원	120,050,000원
7급 공채	12,290명	7,000원	86,030,000원
9급 공채	105,111명	5,000원	525,555,000원
합계	129,406명		731,635,000원

※ 단순 계산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반환액·면제액은 반영하지 않음

- 지방공무원은 공식 통합통계 부재로 인해 국가공무원 대비 약 1.5배 수준 응시 규모로 추정 시 약 11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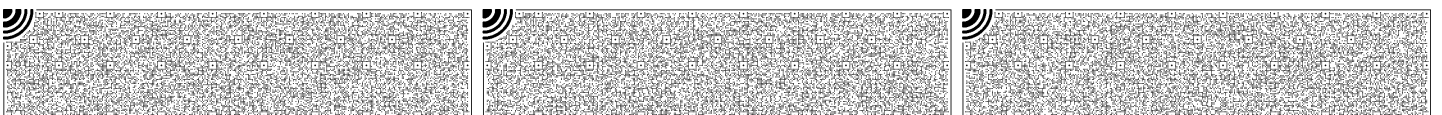
< 지방공무원 응시수수료 수입 추정(국가직의 1.5배 추정치) >

구분	지원인원	수수료	추정 수입
5급 공채	18,007명	10,000원	180,070,000원
7급 공채	18,435명	7,000원	129,045,000원
9급 공채	157,666명	5,000원	788,330,000원
합계	194,108명		1,097,445,000원

- 국가와 지방공무원 응시수수료는 합산 약 20억 미만 수준

< 공무원 응시수수료 전체 수입 추정 >

구분	추정 수입
국가공무원	약 7.3억 원
지방공무원	약 11억 원
총계	약 18.3억 원



Ⅲ 문제점 분석

1. 공직 진입단계에서 경제적 부담 발생

- 현행 응시수수료 금액은 건별로 보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으나, 수험생 입장에서는 복수 직렬 응시, 국가·지방 병행 응시, 연속 회차 응시가 일반화되어 있어 누적 부담이 됨
- 특히 공무원시험 응시자는 청년 구직자 비중이 높고, 2025년 국가공무원 9급 지원자만 10만 명을 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응시수수료는 공직 진입 초기비용으로 기능함
- 따라서 공직 접근성 제고 및 청장년 취업 측면에서 현행 수수료 체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전면적 재검토 필요

2025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선발시험 응시 연령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2025. 2. 8.)

출원자의 평균연령은 30.8세로 지난해(30.4세)보다 약간 높아졌다.

연령별로는 ▲20~29세 51.2%(53,859명), ▲30~39세 36.8%(38,638명), ▲40~49세 10.2%(10,679명), ▲50세 이상은 1.4%(1,422명), ▲20세 미만 0.5%(513명) 순이다.

2. “면제할 수 있다” 는 임의규정으로 인한 권리 보장 미흡

- 국가공무원법 제85조의2 제3항과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2 제3항은 모두 수급자 등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하위 법령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 제3항 역시 ‘면제할 수 있다’는 구조임

- 이러한 방식은 **행정청의 재량** 여지를 남겨 두는 장점이 있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법적 권리보다 정책적 시혜에 가까운 성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
- 따라서 제도의 목적이 사회적 배려나 **공직 접근권 보장**에 있다면 일정 범위에서는 **재량이 아닌 의무 면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타당함

국가공무원법

제85조의2(수수료) ① 제28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 금액은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5. 18.]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2(수수료) ① 제27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 금액은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5. 1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응시수수료) ① 공무원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2. 11. 27., 2013. 12. 4.>

1. 5급 이상 공무원채용시험: 1만원

1의2.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만원

2. 6·7급 공무원채용시험: 7천원

3. 8·9급 공무원채용시험: 5천원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1. 4. 4., 2012. 6. 29., 2013. 3. 23., 2014. 11. 19., 2020. 9. 22., 2021. 11. 30., 2023. 8. 1., 2023. 12. 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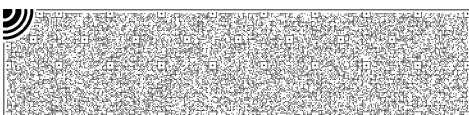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3. 운영기준 불일치로 인한 형평성 및 공정성 저해

- 국가는 인사혁신처 중심의 통합 운영이 가능하지만, 지방은 지방공무원임용령과 각 지자체 인사규칙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다름
 - 최근 여러 지방정부에서 다자녀 대상 면제 문구를 반영하고 있으나, 반영 시점과 표현, 절차가 서로 달라 수험생이 제도를 쉽게 파악하기 곤란함
- 동일 지방공무원 시험이라도 어느 지방정부에 응시하느냐에 따라 고지 방식과 적용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행정 서비스의 형평성에 어긋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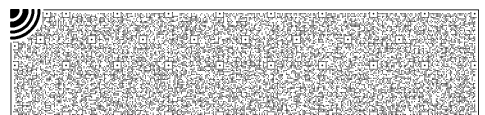
지방공무원 응시수수료 운영 방식 비교

구분	지방공무원 임용령	000시 인사규칙	000군 인사규칙
수수료 문구 표기	수입인지, 수입증지, 전자화폐, 전자결재	수입인지	수입증지
인터넷 접수 시	-	응시수수료 및 부가비용 납부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않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 납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면제 신설	-	2023. 12. 29.	2023. 10. 25.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면제 신설	-	2024. 12. 27.	2024. 5. 1.

- 또한 현재 민간부문과 공공기관 임직원(공무원 신분 아님) 채용시
에도 응시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으며,
※ 채용절차법 제9조에 따르면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함
- 인사혁신처의 국가직 개방형 공무원 시험은 응시수수료를 면제
하고 있는 반면, 지방정부 개방형 공무원 시험은 면제 규정의 미비로
인해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법적 일관성 및 공정성 결여

국가·지방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여부

구분	국가직	지방직	공공기관
일반직 공무원(5~9급)	○	○	임직원 채용 시 응시수수료 없음 ※ 일부 공공기관 면접수당 지급
임기제 공무원	○	○	
개방형 공무원	X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조(응시수수료의 면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응시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4. 12. 16.]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응시수수료의 면제 규정 없음(→ 응시수수료 부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채용심사비용의 승인) ① 구인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단서에 따라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심사비용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채용심사비용 산정 내역서

2. 채용 공고문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용심사비용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4조(응시수수료) ①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에 붙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

1.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각각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입인지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실시하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입증지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22., 2016. 12. 30., 2023. 6. 13.>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전문개정 2009. 2. 6.]

안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6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 및 부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2024. 12. 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설 2023. 12. 29.>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신설 2023. 12. 29.>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3. 12. 29.>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신설 2024. 12. 27.>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6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5.>

1. <삭제 2023.10.25.>
2. <삭제 2023.10.25.>
3. <삭제 2023.10.2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2.2.22., 2023.10.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설 2023.10.25.>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신설 2023.10.25.>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3.10.25.>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신설 2024. 5. 1.>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6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신설 2023.9.2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신설 2025.1.6.>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25.1.6.>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5.1.6.>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신설 2025.1.6.>**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6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신설 2024.4.24.>

4. 행정비용 대비 정책효과의 역전 가능성 존재

- 응시수수료는 납부, 확인, 반환, 면제자격 검증 등 다수의 행정 절차를 수반함
- 특히 접수 취소에 따른 반환 처리, 증빙서류 확인, 이의제기 응대에 적지 않은 행정비용을 발생시킴
- 반면 국가공무원 전체 공채기준 추정 수입은 약 7억 3천만 원으로, 전면 면제 시에도 국가 차원의 재정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음

- 지방정부도 분산된 징수, 반환 구조를 고려하면, 소액 수수료 유지에 따른 실익보다 제도 단순화(면제 방식 도입)에 따른 행정 비용 감소의 편익이 클 것으로 전망됨
- 이는 재정 논리보다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 체감도 측면에서 면제 제도의 확대 필요성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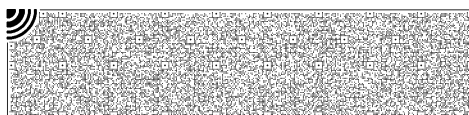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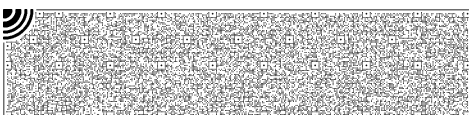
국가공무원 응시수수료 수입 추정(2025년 기준)

구분	지원인원	수수료	추정 수입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12,005명	10,000원	120,050,000원
7급 공채	12,290명	7,000원	86,030,000원
9급 공채	105,111명	5,000원	525,555,000원
합계	129,406명		731,635,000원

지방공무원 응시수수료 수입 추정(국가직의 1.5배 추정 시)

구분	지원인원	수수료	추정 수입
5급 공채	18,007명	10,000원	180,070,000원
7급 공채	18,435명	7,000원	129,045,000원
9급 공채	157,666명	5,000원	788,330,000원
합계	194,108명		1,097,445,000원

* 지방공무원 공채 규모에 대한 통합 통계 부재로 인해 국가직의 1.5배로 추정하였음



민원 사례

지난 3월 국가직공무원시험 추가 취소를 하였는데 **2주가 지나도록 응시료 환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2023. 4.)

1월 18일에 9급 공무원 시험 **다자녀 응시수수료 환불 요청**을 하고 서류 신청을 하였는데 **아직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진행사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2024. 3.)

2024년도 00광역시교육청 지방직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했었습니다. **응시료면제 대상자인데 미리 결재 후 확인을 거쳐 환불해준다고 하였는데 아직 확인이 안되서** 혹시 어디로 환불을 해주는건지 문의 남깁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2024. 7.)

2024년 7급 공채 시험에 **응시 다자녀 환불**란에 체크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는데,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하니 아직 미확인으로 되어있고 **응시료 환불도 진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2025. 1.)

2024년도 5급 공무원 시험을 친 후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 응시료 감면)를 제출 후 담당자와 통화하였고, **응시료 환불을 해주기로 했는데 확인해보니 입금이 안되어** 있습니다. 소정의 금액이지만 돌려받고 싶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2025. 5.)

2자녀 가정의 수험생으로, 2024년도 000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며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행 중이던 **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 대상 수수료 면제 환급 제도가 있었음에도, 2024년도 시험에 대해서는 수수료 환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5년 시험과 관련해서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담당자 확인 후 환급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 건은 현재 담당부서가 아니라 처리해 줄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에 따라 2024년 환급을 어떤 부서 또는 어떤 경로를 통해 요청해야 하는지 안내를 받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 당시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국민신문고 민원, 2025. 6.)

국가직공무원 시험에 복지혜택(장애인연금 수급자)으로 응시료 면제인가요? 제가 청각장애라서 전화를 못 해요. 대신 이메일로 답변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2025. 2.)

언론보도 사례

인천시가 청년 취업지원 사업은 확대하면서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는 여전히 징수하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천시가 지난해 거둔 세입수수료는 총 377억원이고, 증지 수수료 수입은 10억원, 기타 수수료는 367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증지 수수료 항목 안에 공무원 응시 수입증지 수수료 수입이 3,116만원에 불과해 인천시 세외수입에도 별다른 도움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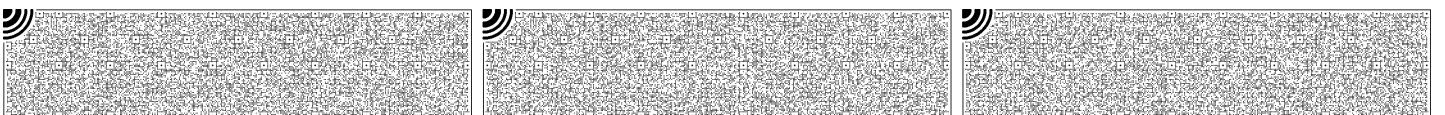
최근 지방직 공무원 지원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응시수수료 폐지가 인재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천시 내부에서도 응시수수료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논의 방향이 주목된다.(일간경기, 2025. 2. 27.)

국민제안 사례

현재 국가직 채용시험에 있어 응시수수료를 일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는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예우가 필요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가족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각종 제증명발급수수료 면제, 입장 시설 감면 또는 면제를 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가족(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가족)에 대해 응시 수수료는 면제토록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국민제안, 2023.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4조(응시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22., 2016. 12. 30., 2023. 6. 13.>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전문개정 2009. 2. 6.]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6조(응시수수료)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신설 2023.9.25.>

5. 지방 분야 통합통계 부재

-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는 각 시험의 공고, 접수 현황은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전국 지방공무원 시험의 연간 총 지원인원, 총 징수수수료, 총 면제인원, 반환금액 등을 일원화하여 공표하는 체계는 미비
- 이로 인해 제도의 비용 효과 분석이 어렵고 지방 간 운영 편차에 대한 관리도 제한되므로 지방공무원 채용행정 데이터의 표준화 관리 필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현황

○ 지방공무원 채용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광역 단위로 운영되지만, 실제 시험 공고와 세부 규정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음

※ 2026년 3월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는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울산시, 강원특별자치도 등 각 시·도의 원서접수 현황이 개별적으로 게시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시험시행정보

시도별 원서접수

서비스 지원

마이페이지

시험시행정보

최근소식

시험공고

합격 및 면접

시험장소

시험통계

시험문제 및 정답

시험통계

전체

2025

이동

제목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번호	시행기관	제목	첨부	공고일	조회수
151	경기도	(응시율)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청원경찰 신규채용시험 필기시험 응시 현황		2025.11.18.	754
150	경기도	(응시율)2025년도 제2회 경기도 공무원직원(무기계약근로자) 통합채용시험 필기시험 응시현황		2025.11.18.	1,034
149	경상남도	2025년도 제5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2025.11.11.	2,136
148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 현황		2025.11.05.	2,366
147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2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		2025.11.05.	3,072
146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 응시 현황		2025.11.04.	5,894

IV

개선방안

국민권익 보호와 공직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전면 면제를 목표로 하되 법령 적합성과 재정 수용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시행 권고

1단계 : 취약계층 및 다자녀 대상 의무 면제로 전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의 “감면할 수 있다”를 “면제하여야 한다”로 개정

2단계 : 청년 응시층이 집중되는 8·9급 시험부터 면제

재정 여건과 시스템 개편 부담을 고려해 지원인원이 가장 많은 8·9급부터 우선 전면 면제하고 이후 5·7급까지 확대

3단계 : 국가 및 지방 전 직급으로 전면 면제

국가가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공적 절차이므로 응시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특히 응시수수료 수입 규모가 약 19억 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적으로도 과도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움

전면 면제 전환 시 응시수수료 납부와 반환 절차가 사라져 행정비용 절감과 민원 감소 효과도 기대됨

다만 무분별한 중복접수 방지를 위해 접수 후 무단불응 반복자에 대해서는 접수 질서 관리 차원에서 일정한 관리장치는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4단계 : 지방공무원 통합관리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연간 총 접수인원, 면제인원, 반환금액, 미응시율, 중복접수 현황 등을 표준 통계로 집계 및 공표하도록 하여 제도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 필요

1. 국가·지방 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근거 마련

1) 법률 개정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 개정안 예시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5조의2(수수료) 삭제

(개정안 예시)

제85조의2(응시수수료의 면제) ① 제28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시험시달시기관의 장은 응시원서 접수, 취소 및 응시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응시수수료 면제에 따른 시험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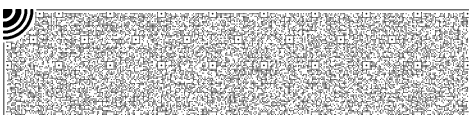
제81조의2(수수료) 삭제

(개정안 예시)

제81조의2(응시수수료의 면제) ① 제27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은 응시원서 접수, 취소 및 응시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시수수료 면제에 따른 시험운영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 개정

-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개정안 예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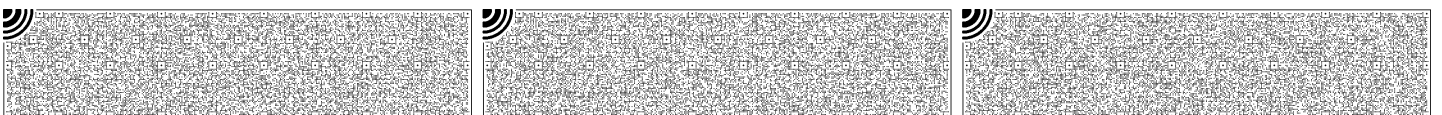
- 제35조(응시수수료의 면제) ① 공무원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응시자에게 응시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원서 접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응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관리기준, 원서접수 취소 절차, 통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 ③ 인사혁신처장은 응시수수료 면제의 시행현황을 매년 점검 공표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 제64조(응시수수료의 면제) ①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는 응시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②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은 원서접수 취소, 통계관리 및 접수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 면제 운영 현황을 매년 통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제28조(응시수수료의 면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00조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응시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3) 지방자치단체 규칙 개정

○ 지방정부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 개정안 예시 >

○○○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안

제10조(응시수수료의 면제) ① 영 제64조에 따른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는 면제한다.

② 응시원서 접수, 취소, 응시자료 관리 및 통계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안

제10조(응시수수료의 면제) ① 영 제64조에 따른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는 면제한다.

② 응시원서 접수, 취소, 응시자료 관리 및 통계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보완 규범으로 조례 개정안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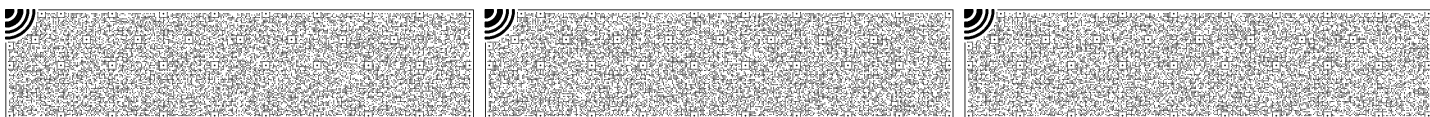
○○○시 공무원 채용지원 및 응시편의 증진 조례안

제6조(응시수수료의 면제 지원) 시장은 관계 법령과 규칙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지방공무원 통합관리체계 구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통합통계 구축
 - 전국 지방공무원 시험의 연간 총 지원인원, 총 징수수수수료, 총 면제인원, 반환금액 등을 일원화하여 공표하는 지방공무원 채용행정 데이터의 표준화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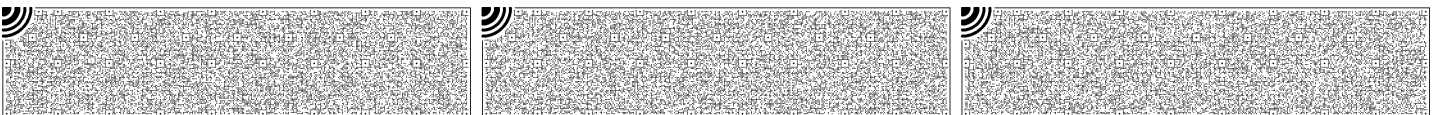
V

조치사항

□

조치사항 및 소관기관

과제명	조치사항	소관기관
1. 응시수수료 면제 근거 마련	○ 「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무원시험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27. 12.)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27. 12.)
	○ 「○○○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 「○○○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지방정부 (’27. 12.)
2. 지방공무원 통합관리 체계 구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통합통계 구축 (지방정부 협업)	행정안전부 (’27. 12.)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6년 6월 15일

위 원 장 정 일 연

위 원 한 삼 석

위 원 조 소 영

위 원 이 명 순

위 원 홍 봉 주

위 원 김 태 영

위 원 신 대 희

위 원 최 진 영

위 원 권 석 원

위 원 최 명 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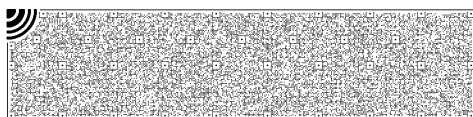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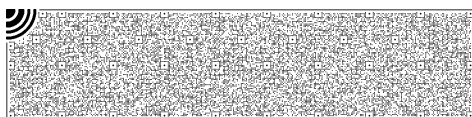
위 원 이 홍 주

위 원 이 태 한

위 원 김 바 올

위 원 신 상 욱

위 원 허 재 우



정 본 입 니 다 .

2026. 6. 15.

국 민 권 익 위 원

